

- [5] Ovum, "The iPhone in Europe - operator strategies," 2007. 11. 30
- [6] Viviane Reding, "Mobile goes Internet: Key Challenges for Mobile Ubiquity in Europe's Single Market," 2008. 2. 11

인도의 통신시장 및 규제제도 현황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김성웅
(T. 570-4436, woongnice@kisdi.re.kr)

1. 개요

세계적인 IT 강국으로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인도와의 FTA, 정확히는 포괄적경제보완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¹⁾은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브릭스(BRICs) 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다.²⁾

한-인도 CEPA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와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수출량 및 전체교역량의 증가, 투자 규모 확대 등 경제 전체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

특히, 통신 분야는 휴대폰(5위), 무선통신기기(10위) 등이 주요수출품목으로서 협정 체결 이후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이며,⁴⁾ 서비스 시장은 현재 투자 비중이 크지 않으나 CEPA 협정 체결로 시장진입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1) CEPA: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2006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 2007년 12월 9차 협상까지 진행됨
- 2) 외교부 보도자료(07-826호), 한·인도 포괄경제동반자협정 제9차 협상 결과, 2007. 12.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포괄동반자협정(CEPA) 체결시 한-인도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가 예상됨
- 4) 한·인도 FTA의 체결로 양국 IT 분야의 관세가 모두 철폐될 경우, 對인도 수출은 1억 6,235만 달러, 수입은 약 57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 흑자 증가폭은 1억 6,178만 달러 증가가 전망됨. IT산업 생산유발액은 73억원으로 예상되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정보통신산업 전체적으로 19억원,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는 14억원, 정보통신부품은 부가가치 4억원 유발 예상. 정보통신정책학회, IT산업에 대한 한-미 및 한-인도 FTA 파급효과 분석, 2006. 11. pp.70~74.

한-인도 CEPA 협상은 양국의 교역구조상 수출에 있어 경합정도가 낮아 상호 무역수지 증대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비스 시장의 효과는 가시적인 수치 측정이 어려워 본 협상을 통한 규제제도 및 시장진입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⁵⁾

인도와의 포괄경제보완협정 협상 과정 중에 있는 현 상황에서 인도 통신시장 규제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협상 대응 및 전략 마련과 향후 협정 체결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통신시장 현황

1997년 이후 인도 통신시장에 경쟁 원칙이 도입되고, WLL 서비스와 신규사업자의 등장으로 인해 통신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다. 2005년 상반기에 무선통신 가입자 수가 유선통신 가입자 수를 초월하여 세계에서 9번째 무선통신시장으로 거듭났으며, 대표적인 신흥 성장시장으로서 인도 통신시장은 성장률이 2002년 불과 0.8%에서 2007년 25.9%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무선통신시장 성장규모가 2002년 대비 2007년 13배 정도로 까지 확대되었다.

〈표 1〉 인도 통신서비스 시장 개관(2007년 6월 기준)

주요 유선통신 사업자	BSNL, MTNL, VSNL ⁶⁾
주요 무선통신 사업자	Bharti, BSNL, BPL, Reliance, Hutchison, Idea Cellular
주요 인터넷 사업자	BSNL, MTNL, VSNL, Satyam/Sify, Data Infosys
유선망 보급률	3.5%(40백만 회선)
무선통신 보급률	16.4%(184.9백만 가입자)
인터넷 보급률	7%(7백만 가입자)
광대역 보급률	0.2%(2.42백만 가입자)

자료: Paul Budde, India-Key Statistics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 2007

유선통신 시장은 2003년 통합통신허가제의 도입과 역내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

5)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 인도의 일시입국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 바, 인도측은 독립전문가(IP)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까지의 양허를 주장하고 있어 IT 인력 문제에 대한 적절한 타협안 모색이 중요함

정재화, 우리나라 FTA정책 실적 평가, FTA 세미나, 2008. 2. p.8.

6) Barath Sanchar Nigam Ltd(BSNL), Mahanagar Telephone Nigam Ltd(MTNL), Videsh Sanchar Nigam Ltd(VSNL)

해 BSNL, MTNL, Bharti, Reliance, Tata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무선 및 인터넷 시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유선통신 시장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선통신 시장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경쟁의 심화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데이터 서비스에 치중하며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다. GSM 기술이 점유율 70%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Bharti(31.4), BSNL(20.9), Hutchison(22.6), IDEA(11.9) 등 4개사가 GSM 시장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CDMA는 약 3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 2〉 통신서비스 시장 매출이익 규모(2002~2007)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유선통신	7.3	7.4	8.7	8.6	8.5	-
무선통신	1.0	2.0	3.7	5.3	9.0	12.8
인터넷서비스	0.7	0.9	1.1	1.4	1.9	-
총액	9.0	10.3	13.4	15.4	19.4	22.4
연간 변화율	0.8%	14.9%	29.8%	14.4%	26.3%	25.9%

자료: IDATE, The World Telecom Services Market, 2006. Paul Budde, India - Key Statistics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 2007

인도는 인터넷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9,000 여개의 인터넷 카페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다. 현재 BSNL(45.21%) 및 MTNL(19.01%)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3. 통신시장 규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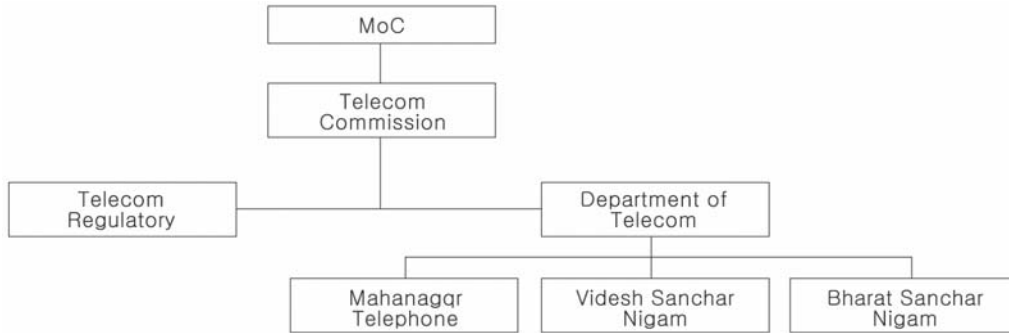
가. 통신규제기관

인도의 통신규제 관련기관은 정보통신부(MoC 혹은 MCIT)⁷⁾가 주무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최고의결기관인 통신위원회와 그 하부에 통신규제위원회 및 통신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 통신서비스, 산업 등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며, 통신위원회(Telecom Commission)는 통신 관련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우리나라 통신위원회와 유사하며 통신정책 결정, 사업권 발급, 주파수 관리, 민간 사업자 관리 및 통제, 연구 및 개발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총괄적인 의사결정 기구이다.

7)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DIT, DoT, DoP로 구성됨

(그림 1) 인도 통신규제기관 조직도



인도통신규제위원회(TRAI)⁸⁾는 독립된 기관으로 통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를 담당하나, 직접적인 개입 대신 제언과 권고의 형태로 규제를 시행한다. 면허부여 및 상호접속 요건 및 조건 설정, 서비스 품질기준 설정, 사용자 이익 보호, 보편적서비스 의무 합치성 감독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된 5인의 위원을 통해 운영된다.

정보기술청(DIT)⁹⁾은 IT 관련 정책 개발 및 적용, 정부내 IT 인력관리, 전자장비 관련 요건 조정,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증진, IT 교육 증진의 기능을 담당하고, 전기통신청(DoT)¹⁰⁾은 전기통신 분야 독립규제기관으로서 면허 발급 및 취소, 면허 수수료 수납, 주파수 할당, 번호자원 관리 등 정보통신정책 총괄 및 국영사업자 관리를 담당하고, BSNL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및 운영도 맡고 있다.

나. 통신사업 관련 법규

최근까지 국영기업이 통신사업을 담당해오며 따라, 통신사업을 규제하는 통신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DoT가 발표하는 통신정책 및 지침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서비스별로 Guideline 형태로 발표된다. 인도전신법이 기본법률로서 기능하며 하위 시행령으로 인도전신 규정, 그리고 세부 서비스 분야에 따른 각종 지침이 있다.

8)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9)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10) 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표 3> 통신관련 법령, 지침, 정책

구 분		관련법규
법률/ 시행령	통신분야 중앙정부 독점권에 관한 법	Indian Telegraph Act(1885), 개정됨(2006)
	무선사업권 허가관할권에 관한 법	Indian Wireless Telephony Act(1933)
	규제기관 관련법, 명령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Act(1997), Ordinance(2000)
	Indian Telegraph Act의 시행령	Indian Telegraph Rules(1951)
지침	기본서비스 발급지침	Guidelines for issues of licence for basic service(2001, 1)
	국내장거리서비스 발급지침	Guidelines for issues of licence for national long distance service
	보편적 서비스 이행지침	Guidelines for implement of universal service support
	인터넷 전화서비스 허가지침	Guidelines for issues of permission to offer internet telephony service
정책	정보통신규제 정책	Broadband Policy(2004)
		New Telecom Policy(1999)
		National Telecom Policy(1994)

자료: Paul Budde, India-Telecommunication Regulatory Overview, 2007.

다. 진입 규제정책

1) 서비스 분류

국가통신정책(National Telecom Policy 1994)에서 통신서비스를 기본서비스(Basic Service)와 부가서비스(Value-added Service)로 구분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서비스에는 국내국제 장거리 및 이동전화, 위성통신, 호출, V-SAT, 무선라디오트렁킹(Mobile Radio Trunking)이 해당되며, 부가서비스에는 전자우편, 영상회의, 음성메일, V-SAT(64Kbps)을 이용한 국내데이터 서비스, 오디오-문서 및 비디오-문서 서비스, 라디오 호출 등이 해당된다.

2) 사업자 분류

신통신정책(New Telecom Policy 1999)에서 사업자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접속사업자는 유선, 이동통신, 케이블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는 인터넷전화, 국내장거리, 국제장거리, 라디오호출서비스, 공중무선라디오트렁킹서비스, 기타(텔레뱅킹, 텔레의료), GMPCS서비스, V-SAT기반 서비스, 인프라(카테고리- I, II) 제공사업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3) 허가제도

면허부여를 위한 가이드라인(The broad guidelines for granting Licence for Basic Telephone Service)에 따르면, 면허(license) 부여를 위해 주 단위로 지역적 구분이 된 circle을 분할하여 허가하고 있다. 각 circle에는 2개의 이동통신 서비스 면허 및 1개의 유선네트워크 면허가 부여되며, 각 서비스 지역에 1개의 지정사업자만이 공중, 국내, 장거리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본서비스 사업 면허 자격은 인도기업법(Indian Companies Act 1956)상 인도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자들은 각 Circle마다 분리하여 서면지원서를 신청해야 하고,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다. 사업권은 배타적인 성격은 없으며 20년간 유효하다. 단, 1차례에 한해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4) 외국인 지분제한

2003년 WTO 양허안상¹¹⁾ 외자제한은 49%였으나, 2005년 10월 인도 연방의회는 인도인, 인도기업이 26%를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통신부문 외국인 지분 제한을 49%에서 74%로 확대하였다. 2006년 11월 미국AT&T와 인도 Mahindra 통신투자회사 간 합작회사 형태로 외국인 지분 소유 74%를 최초로 허가하였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 지분제한을 100% 허용, 74% 허용 등으로 구분해놓고 있고, 74% 허용에는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100% 허용 서비스에는 전기통신장비 제조업자,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 카테고리 I 인프라 사업자, 이메일서비스 사업자, 음성메일서비스 사업자, 콜센터 및 IT활용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해당된다. 74% 허용 서비스에는 국내외 장거리, 기본통신, 이동통신, 통합접속서비스(기본 및 이동통신서비스), GMPCS, 공중무선라디오트렁크서비스, VSAT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카테고리 II 인프라, 라디오호출서비스 등의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 외국인 지분 74% 허용 조건

- 외국기관, 인도역내 비거주 인도인, 외국통화변환채권, 미국예탁증서, 글로벌예탁증서, 우선주, 인도 프로모터 및 투자회사에의 투자 등 외국인 지분보유 총합계가 74%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실제 운영 회사 또는 지주회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허용됨. 잔여 26%는 인도 역내 거주 인도인 또는 인도기업이 보유해야 함
- 사장, CEO 등 다수의 이사회임원은 면허협정의 강제에 의거 인도에 거주하는 인도인이어야 함

11) WTO 양허안: S/DCS/W/IND(2 April 2003)

- 주주협정서에 상기 인도 거주 인도인 요건이 명시되어야 함
- 49%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자동승인을 획득하나 면허사업자, 인도프로모터, 지주회사를 포함한 투자회사는 전체 지분이 74%에 이를 경우 외국인투자증진위원회(FIPB)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결 어

인도의 통신서비스 시장은 최근 지속적인 상승기류 속에 성장해가고 있다. 인도의 실질적이며 잠재적인 거대한 시장수요는 IT 성장동력 부재로 주춤하고 있는 우리 통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²⁾ 서비스 시장 역시 자유화의 진전으로 인해 외자제한 완화 등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되어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시장진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도의 규제제도 및 관련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인도 CEPA 협상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인도 통신시장 및 규제제도 내용을 정부는 협상에서 활용하고, 협정 체결 이후에는 홍보 및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1] Paul Budde Communication, Key Statistics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 India, 2007.
- [2] _____,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Overview, India, 2007.
- [3] International Telecoms Intelligence(ITI), Telecoms Market Report, India, 2007.
- [4] WTO 양허안: S/DCS/W/IND(2 April 2003)
- [5] 정재화, 우리나라 FTA정책 실적 평가, FTA 세미나(한미FTA 비준 촉구 및 신정부의 FTA 정책방향), 2008. 2.
- [6] 김홍중,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통상전략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의 모색, 외교부·KIEP 공동세미나, 2008. 2.
- [7] 외교부, FTA 추진 로드맵, 2003. 8.
- [8] _____, 전략적 FTA 추진 현황 및 계획, 2007. 4.
- [9] 외교부 보도자료(07-826호), 한·인도 포괄경제동반자협정 제9차 협상 결과, 2007. 12.
- [10] www/traigov.in

12) 우리나라도 인도에의 시장 및 투자 확대를 지역별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홍중,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통상전략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의 모색, 외교부·KIEP 공동세미나, 2008. 2. 참조